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3. 5. 31.(수)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804호 전라북도청장학금고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1

발행 전라북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장학금고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3. 5. 31.

전라북도 훈령 제1804호

전라북도청장학금고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청장학금고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청장학금고운영규정”을 “전라북도청 장학금고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청장학금고”를 “전라북도청 장학금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금 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청장학금고운영위원회”를 “전라북도청 장학금고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장학생선발대상은 전라북도청 및 각 원·사업소(이하 “도청”이라 한다) 6급 이하공무원의 자녀로서”를 “장학생 선발대상은 전라북도청 5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 중”으로, “전문대학이상 각급 대학교”를 “각급 대학”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장학생선발인원”을 “장학생 선발인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출신고등학교의 최종학년성적”을 “출신 고등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으로, “20이내”를 “20이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80점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B학점이상”을 “B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거래은행계좌”를 “거래은행 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연한”을 “지급 연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 실·국·원 및 사업소”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학생지원서”를 “장학생 지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신고교 성적 증명서(재학생은 학업성적 증명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확처분”을 “정확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중 “작성하여”를 “작성하고”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청 장학금고운영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전라북도청장학금고</u>(이하“금고”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금고의 운용·관리 등) ①금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금고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u>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p> <p>②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u>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p> <p>1. <u>기금운용관</u> : 총무과장</p> <p>2. <u>기금출납원</u> : 담당업무사무원</p> <p>제3조(운영위원회) ①장학생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과 금고운용·관리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청장학금고운영위원회</u>(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선발대상) 장학생선발대상은 <u>전라북도청 및 각원·사업소</u>(이하 “도청”이라 한다) 6급 이하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의 지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u>전문대학이상</u> <u>각급 대학교</u>의 신입생과 재학생이어야 한다.</p> <p>제5조(선발인원) 장학생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6조(선발기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신입생은 <u>출신고등학교의 최종학년성적</u>이 전체의 100분의 20이내인 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점이 80점이상인 자</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청 장학금고 운영규정</u></p> <p>제1조(목적) ----- <u>전라북도청 장학금고</u>----- ----- -----.</p> <p>제2조(금고의 운용·관리 등) ①----- ----- ----- ----- 「<u>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u>」----- -----.</p> <p>②----- <u>각 호</u>----- -----.</p> <p>1. <u>기금운용관</u>: -----</p> <p>2. <u>기금출납원</u>: -----</p> <p>제3조(운영위원회) ①----- ----- ----- <u>전라북도청 장학금고 운영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u>전라북도청 5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 중</u> ----- ----- ----- ----- <u>각급 대학</u>----- -----.</p> <p>제5조(선발인원) <u>장학생 선발인원</u>----- ----- -----.</p> <p>제6조(선발기준) ----- <u>각 호</u>----- -----.</p> <p>1. ----- <u>출신 고등학교의 최종학년 성적</u>----- ----- <u>20 이내</u>----- ----- <u>80점 이상</u>-----</p>

<p>2. 재학생은 전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 <u>B학점 이상</u>인 자</p> <p>제8조(장학금 지급) ① (생 략)</p> <p>②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장학금은 보호자의 <u>거래은행계좌</u>에 입금 조치한다.</p> <p>③ 장학금의 <u>지급년한</u>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지급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9조(지원절차) ① 위원장은 장학생의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u>각 실·국·원 및 사업소</u>에 홍보한다.</p> <p>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학생지원서</u>(별지 서식) 2. (생 략) 3. <u>출신고교 성적증명서</u>(재학생은 학업성적증명서) <p>제12조(지급중단) 장학생으로서 다음 <u>각호</u>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학 또는 <u>정학처분</u>을 받았을 때 2. ~ 5. (생 략) 6. <u>기타</u>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p>제14조(장학생 관리)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대장을 <u>작성하여</u>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한다.</p>	<p>2. ----- <u>B학점 이상</u>----- --</p> <p>제8조(장학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거래은행 계좌</u>----- -----.</p> <p>③ ----- <u>지급 연한</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원절차) ① ----- ----- <u>부서</u>-----.</p> <p>② ----- <u>각 호</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학생 지원서</u>----- 2. (현행과 같음) 3. <u>출신고교 성적 증명서</u>(재학생은 학업성적 증명서) <p>제12조(지급중단) ----- <u>각 호</u>의 어느 하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정학 처분</u>----- 2.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p>제14조(장학생 관리) ----- ----- <u>작성하고</u> ----- -----.</p>
---	---